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도록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및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19조의2)
-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8조)

-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대상 및 공개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의2 ~ 제48조의3)
- 회의 방청 절차 마련(안 제76조 ~ 제79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등 미흡한 규정 보완 (안 제82조의2 ~ 제82조의6)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2
 - 전자메일 : aragu@korea.kr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제2항 단서 중 “제외”를 “제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

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3장제6절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

런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현장 방청, 이메일 등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8조의 제목 “(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를 “(방청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사무과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2조의2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2조의4(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의5(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2조의6(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략)</p> <p>② <u>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u> <u><단서 신설></u></p> <p>③ ~ ⑥ (생략)</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④ (생략)</p> <p>⑤ <u>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생략)</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만, 휴·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u></p> <p>⑥ <u>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u></p> <p>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현행과 같음)</p>

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7조(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에 임시회의록이 등록된 후 10일 이

<삭 제>

<삭 제>

제47조(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

----- 3일 -----

<신 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신 설>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①

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입사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76조(방청의 허가)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현장 방청, 이메일 등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등) ①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③ (생략)

<신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의장 또는 위원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사무과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 6. (생략)

<신설>

<삭제>

<삭제>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

<신 설>

<신 설>

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
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
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2조의4(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
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의5(자문위원의 제척·기피

· 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
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
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2조의6(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신 설>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

